□ 거창군 농업인상해보험료 지원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5. 11. 21.

나. 발 의 자 : 조선제 의원 외 의원 8명

다. 회부일자 : 2005. 11. 21.

라. 상정일자 : 2005. 12. 6(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마. 의안번호 : 제2005 - 84호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o 농기계의 발전과 확대 공급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력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수해나 화재 등으로 인한 농기계의 피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정신적 재산상의 손실이 막대하고 이로 인하여 농업소득의 안정적 보장이 어려운 실정으로,
- o 농기계 사고와 농기계 피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 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농기계 사고 등 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0 지원 대상은 모든 농기계로 사고로 인한 농업인 안전보험과 수해나 화재등

농기계의 피해에 대한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을 대상으로 함(안 제4조)

- o 지원 범위는 군비 지원액이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80%를 초과할 수 없고, 총 지원액이 1농가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 o 지원금의 신청은 보험 가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함(안 제6조)

3. 검토의견

- O 농기계 운행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수해나 화재 등 재해와 고가의 농기계 도난에 따른 피해로 인한 농업인의 정신 적 및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보험료를지 원하여 보험가입을 권장하고 농기계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므로서 농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수 있게 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o 보험료 지원대상을 신체상의 상해 및 재해 등에 따른 농기계 피해에 한정하도록 분명히 규정한 것은 범위상 적정하고, 지원대상을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군내모든 농업인으로 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범위는 농민이 부담한 보험료의 80% 이내 및 농가당 1백만 원을 초과할수 없도록 상한선을 정한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농가를 지원할수 있는 조치로 판단됨.
- 0 동 조례 제정안은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o 제5조의 후단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험료를 농가당 2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함.

7.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

o 본 조례안은 농업인에게 농기계 상해 보험과 농기계 피해에 대한 보 험료를 지원하는 조례로서 총 보험료 지원액을 100만원 이내로 정한 것을 상해보험과 농기계 보험료만을 지원하면서 너무 높게 책정할 필 요가 없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여 지원액을 20만원 이내로 수정가결 하였음.

- 8. 소수의견 요지: "생략"
- 9. 기타 필요한 사항: "생략"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비고
제5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지원으로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80% 이내로 하며, 총 지원액이최고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하며, 총 지원액이 최고 <u>20</u> 만원을 초과할 수 없 다.	